2020학년도 학교법인 영광학원 특수학교 보건 · 영양 · 특수(초등)교사 · 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학년도 학교법인 영광학원 보건·영양·특수(초등)교사·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장

---

1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가. 선발방법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한다.

나. 시험전형은 아래와 같이 2차로 나눠서 실시하되, **제1차 시험(필기) 및 원서접수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이하 "대구교육청")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제2차 시험은 본 법인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1) **제1차 시험: 교육학 및 전공**
2) **제2차 시험: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다.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라. 제1차 시험 및 원서접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청의 "2020학년도 대구광역시 공립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며, 대구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제1차 시험과 관련된)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마.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대구교육청 및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바. 시험 전형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결시)한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한다.

사. 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는다.

아. 기타 공고되지 않는 사항은 대구교육청 및 본 법인 이사장의 결정에 따른다.

2 선발예정과목 및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학교	임용예정일	비고
보건	1	**본 법인 내 6개 특수학교** (대구광명학교, 대구영화학교, 대구보명학교, 대구보건학교, 대구덕희학교, 포항명도학교)	2020. 3. 1.	비교수 교과(보건,영양)교사는 초·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
영양	1			
특수학교(초등)	4			
특수학교(중등)국어	2			
특수학교(중등)영어	1			
특수학교(중등)수학	2			
특수학교(중등)미술	2			
특수학교(중등)과학	1			
특수학교(중등)음악	1			
특수학교(중등)직업	3			
계	18			

※ 상기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은 관할 교육청과의 선발계획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학교법인 영광학원 특수학교 교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자는 시·도간 구분없이 법인 내 전체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임용됨.

3 응 시 자 격

가. 선발예정과목별 응시자격

선발예정과목	응 시 자 격
영양교사	○ 영양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 【2020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보건교사	○ 보건.양호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 【2020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특수학교(초등)	○ 특수학교(초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020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특수학교(중등) 국어·영어·수학· 미술·과학·음악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0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선발예정과목	응 시 자 격
특수학교(중등) 직업	○ **특수학교(중등)직업교육**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중등)전문계 표시과목**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능계 기술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 가능.

※ 특수학교(중등)과학은 교과군으로 임용(해당 교과군의 표시과목 응시 가능)
특수학교(중등)과학 교과군 : 특수생물, 특수화학, 특수물리, 특수공통과학, 특수지구과학

다. 응시연령: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6)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마. 결격자 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 시행일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관련 사항: 제1차 시험 예정일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2014. 1. 1.이후 취득한 인증서 인정)을 갖추어야 하며, 미 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함.

4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2020학년도 특수학교 교사 선발계획 공고: 2019. 8. 28.(수)

나. 제1차 시험

1) 시험일자
   가) 특수(초등)교사: 2019. 11. 9.(토)
   나) 특수(초등)교사 이외: 2019. 11. 23.(토)
2) 합격자 발표: 2020. 1. 6.(월)

다. 제2차 시험

1) 시험장소 공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지
2) 시험일자: 2020. 1. 22.(수)
3)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2월 중(추후 확정)

※ 응시자 예비소집은 별도로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를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대구교육청 및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대구교육청 홈페이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및 우리 법인 산하 각 특수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 접수기간

1) 특수(초등)교사: 2019. 9. 23.(월) ~ 9. 27.(금)
2) 특수(초등)교사 이외: 2019. 10. 21.(월) ~ 10. 25.(금)

나.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대구교육청에 위탁하여 시행)

다. 유의사항

1) 대구교육청 공립 시험 지원자 중 공·**사립 동시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에 한하여 우리 법인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중복지원이 가능함.**
2) 타 시·도 교육청과 중복지원은 절대 불가함.(중복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지원으로 일어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고,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최초 원서 접수만 인정됨.)

6 각종 증명서류 제출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가. 각종 증명서류 제출대상 및 기간

대상자	제 출 일	제 출 처	제출방법
제1차 시험 합격자	2020. 1. 2.(목) ~ 1. 7.(화) [6일간], 10:00 ~ 17:00 단,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영광학원 법인 사무국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본관 5층) ☎ (053)650-8402~3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50길 33(대명동) (우)42400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대리인 제출 가능 - 등기우편은 제출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증명서류제출목록표와 함께 제출

○ 증명서류 제출대상자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일치되는 서류이여야 함.(단, 교원자격증은 사본 제출, 의사진단서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원본)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제1차 시험 합격이 취소됨.

나. 제출서류

1) 공통사항(제1차 시험 합격자 전원 제출)

대상 및 규격	제출서류
○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2020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표기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택1) - 대학원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부전공과목 응시자 : 복수.부전공 이수예정확인서 1부.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포함)과 법정해당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호"로 표기된 것만 인정함.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및 부전공자격 소지자 포함

2)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제출

대상 및 규격	제출서류
○ 병역의무 이행자 - 병역필로 표기한 자(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적용 시 활용) ※ 단, 병역 복무중인 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2019. 10. 25.)현재 전역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전역예정일 기재) 1부 제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1부 또는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1부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단, 청각장애인은 의사소견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류 일체 ※ 원서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원본서류 각 1부

7 시험과목 및 유형별 출제범위 및 배점

가. 제1차 시험

1) 대구교육청에 위탁하여 시행.

2) “특수학교(중등)교사” 선발예정과목은 과목 구분없이 대구교육청 시행 시험 모집분야 “특수학교(중등)교사”에 해당되는 제1차 시험과 동일하게 시행됨.

나. 제2차 시험: **본 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의함.**

시험과목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배 점	
		일반교과	비교수교과(보건·영양)
수업실연	수업능력 평가	50점	·
심층면접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50점	100점
계		100점	100점

8 합격자 결정 및 최종합격의 취소

가. 합격자 결정 방법

구 분	합격자 수	합격자 결정 방법
제1차 시험 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 시험의 성적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되,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의 지원 유형별 절차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최종 합격자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	○ 최종 합격자는 제1차 시험의 성적(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포함) 40%와, 제2차 시험의 성적(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포함) 60%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제2차 시험의 성적(가점제외)이 높은 사람 - 3순위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 4순위 : 교직적성 심층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5순위 :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6순위 : 전공(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7순위 : 교육학(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구 분	합격자 수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 및 제2차 시험(수업실연 및 심층면접)의 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퍼센트 미만(과락)인 사람 및 각 시험 전형별(단계별), 시험 과목별로 미 응시(결시)한 사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한다. ※ 모든 시험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한다. ※ 가산점: 해당사항 없음.		

나. 최종합격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1)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2)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3)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응시원서에 입력한 내용과 관련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4) 가점 부여대상이 아닌 자가 가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5)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0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6)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7) 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8) 병역복무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단, 제출자는 임용유예가능)

9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4인 이상 선발예정인 "특수학교(초등)" 과목에만 적용

가.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원서접수 마감일(2019. 10. 25.)현재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가점 부여: 제1차, 제2차 시험별로 적용

매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한다.

다. 선발상한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 합격 대상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라. 소수선발과목: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도 가점(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다.(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다.)

마. 응시자 유의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10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가.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서 요건을 갖추어 장애인 수험생 편의 제공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제공함.

나. 제1차 시험의 장애인 수험생 편의제공 내용은 “2020학년도 대구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공고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제2차 시험의 장애인 수험생 편의 제공은 우리 법인 자체 시행계획에 따름.